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409
----------	-------

제출년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임
- 일괄정비 추진에 따른 법제사무의 효율성 증진

주요내용

- 미연에 → 미리 (안 제1조)
- 사계 → 해당 분야 (안 제2조)
- 하오 → 오후 / 상오 → 오전 (안 제3조)
- 양양 → 장려 (안 제4조)
- 계리 → 회계처리 (안 제5조 · 안 제6조)

제정조례안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 4

※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 : 2020. 6. 30. ~ 2020. 7. 20.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 붙임 5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 1】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미연에” 를 “미리” 로 한다.

제2조(「안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안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계” 를 “해당 분야” 로 한다.

제8조 중 “사계” 를 “해당 분야” 로 한다.

제3조(「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하오” 를 “오후” 로, “상오” 를 “오전” 으로 한다.

제4조(「안산시 포상 조례」의 개정)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 장려에 숭선수범한 경우

제5조(「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한다” 를 “회계처리한다” 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 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 을 “회계처리상황” 으로 한다.

제6조(「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한다” 를 “회계처리한다” 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 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 을 “회계처리상황”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혁신법무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혁신법무과장 박 근 호
	담당·팀장 직위·성명	혁신법무팀장 김 정 삼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류 진 희 (행정 2719)

신 · 구조문 대비표

제1조(「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 략)</p> <p>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u>미연에</u>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p> <p>7. (생 략)</p>	<p>제2조 (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 ----- ----- ----- <u>미리</u> ----- ----- -----.</p> <p>7. (현행과 같음)</p>

제2조(「안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② (생 략)</p> <p>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u>사계</u>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시간부급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 한다.</p> <p>제8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u>사계</u>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해당 분야</u>----- ----- -----.</p> <p>제8조(고문) ----- ----- <u>해당 분야</u>----- -----.</p>

제3조(「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생략)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u>하오</u> 7시부터 다음 날 <u>상오</u>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모,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오후</u> ----- -- <u>오전</u> ----- . ----- ----- ----- ----- ----- ----- .

제4조(「안산시 포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2. (생략) <u>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u> <u>술선수범한 경우</u> 4. (생략)	제5조(표창장) ----- ----- . 1.·2. (현행과 같음) <u>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 장려에</u> <u>술선수범한 경우</u> 4. (현행과 같음)

제5조(「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출자) ① (생략)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u>계리한다.</u> ③·④ (생략)	제12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회계처리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p>제19조(<u>계리상황의 보고</u>)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u>계리상황</u>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제19조(<u>회계처리상황의 보고</u>) ----- ----- <u>회계처리상황</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	---------------------------------------------------------------------------------------------------------------------

제6조(「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2조(출자) ① (생략)</p> <p>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u>계리한다</u>.</p> <p>③·④ (생략)</p>	<p>제12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회계처리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u>계리상황의 보고</u>)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u>계리상황</u>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제19조(<u>회계처리상황의 보고</u>) ----- ----- <u>회계처리</u> <u>상황</u>----- ----- -----.</p> <p>1. ~ 5. (현행과 같음)</p>